

문화·여성

“아내·아동·노인 학대 예방위해 ‘법’개입 필요”

「한국여성의전화」 20일 전문가 워크숍서 제기
지난해 이어 두번째 ... 여성문제·정책화 일환

「한국여성의전화」(회장 신혜수)는 지난 83년에 창립했다. 아내구타 성폭행 등에 맞서 실천사업들을 벌여 왔으며, 87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매맞는 아내들과 강간당한 여성들을 위한 긴급피난처인 ‘쉼터’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여론화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정폭력 추방주간’ 선포(94년), ‘가정폭력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대(94년) 결성 등 일련의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지난 7월20일 기독교연합회관 소회의실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을 가진 것도 이런 사업의 연장에 있다. 또한 연초 신혜수(44) 회장, 이상덕 부회장 체제로 임원



사진은 「성희롱 사건」에 항의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모습.

개편을 한 「여성의전화」가 인권 유린 등 현실적인 여성문제의 대응차원을 넘어 이를 정책화

시키고 이론적으로 체계화 해 내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리겠다는 이른바 대안제시의



「집돌생활사 박물관」 인병선 관장은 25일 오후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우리집돌문화」(현암사 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명석 짚신 역사지붕 등 수천년동안 우리 조상들이 집과 풀로 만들어 써온 생활도구들의 쓰임새와 명칭, 제작방법을 지역별로 나눠 소개한 기행 산문집. 시인 고은, 구중서 수원대학교수, 김도현 문제부처관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가시적 사업이기도 하다.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의 당위성만이 아니라 실효성있고 ‘현실 가능한’ 문제들을 모아내는데 초점이 모아졌

다. 모두 6가지 발제중 가정폭력방지법 입법의 방향, 아내학대에 대한 법개입의 문제 등 다른 4개의 발제 요지를 정리했다.

〈남상오 기자〉

신은주 교수(피어선대 사회복지학)

「아내학대의 실태 및 법개입의 필요성」

아내학대는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문제로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 이 문제가 특별한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이 조사결과로 나타났다. 아내학대는 ‘마누라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한다’는 식의 전통적 관념, 부인의 자포자기적 패배의식,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아내의 무력감, 남편에 대한 종속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책임강조 및 순종과 인내 강요쪽으로 왜곡돼 왔다. 그럼에도 학대받는 아내들은 공포감, 아이문제 등 이런저런 이유로 가해자를 떠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고립감, 우울증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

아내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학대의 피해자에 대한 프로그램보다 가해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이다. 둘째 아내학대에 대한 법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법규정의 명시는 아내학대의 불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인 변화의 촉매로도 작용하여 의식의 변화와 함께 실재적인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형사적 절차와 구타자 프로그램 같은 사회복지적 절차들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 법적 처분을 실현하도록 도와 줄 민간단체나 반민 반정부단체의 개입,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긴밀해야 한다.

이배근·조정관(유니세프 위원회)

「아동학대 현황과 치료·예방위한 조치」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연간 청소년 자살 건수가 1백70명을 넘으며, 가출아동이 1만명을 넘는 현실(95년 교육부)에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아동학대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노력으로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학대받고 있는 아동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많다.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다. 한국은 지난 90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하고 이듬해 비준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는 않고 있다.

아동학대방지법 시안을 거론한다면 우선 아동학대의 문제를 의무신고토록하고, 지정아동 보호기관을 설치하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절차상의 특례들을 삽입하며,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을 받도록 하고 치료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상담 및 재활시설 등을 설치토록하는 등의 요소들이 포함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대해 우리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행정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이찬진 변호사

「가정폭력방지법(가칭)의 입법방향」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 약 6가지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이 법 제정의 보호법익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의 평화와 안정성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데 두어야 한다. 두번째는 가족구성원의 정의로, 직계혈족 및 배우자인 친족, 친형제관계 등에 국한되어 법률상 정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입법시 아내학대의 문제와 함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의 문제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돼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라는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돼야 한다. 다섯째,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책은 당해 폭력의 양태에 따른 기존의 실정법과는 다른 특수한 고려가 수반돼야 한다. 여섯째 가정폭력에 관대한 국민일반의 규범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 홍보프로그램이나 이에 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정과 관련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보호 육성한다”는 목적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의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폭력발생시의 피난처와 위기개입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할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운영, 가정보호처분, 긴급보호명령도 꼽을 수 있다.